

23가지 신화 타파

(저작권,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등)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화 1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화 2

“짜통 옷은 불법이다”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신화 4

**“블로그에 남이 찍은
맑은 하늘사진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신화 5

**“나는 내 삶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신화 6

**“창작을 하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신화 7

**“저작권자는
한 사람이거나
한 업체여야 한다”**

신화 8

**“남의 저작물을 많이 고칠수록
저작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된다”**

신화 9

“표절은 소송 대상이 된다”

신화 10

“ ‘모든 권리’를 가져왔으면
작품에 나온 캐릭터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괜찮다”

신화 11

**“저작권상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이나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화 12

“남의 저작물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화 13

“불법 다운로드라는 것이 있다”

신화 14

“카페에서 무드 음악을 트는 것이나
촛불집회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신화 15

“저작권 소송은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제기하는 것이다”

신화 16

**“나는 내 얼굴에 대해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

신화 17

“저작권이든,
초상권이든,
항상 동의를 구하는 편이 낫다”

신화 18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신화 19

“공인의 초상일수록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신화 20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라도 문제가 없다”**

신화 21

“진실에 가까울수록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신화 22

“<엘지란제리>를 창업하려면
엘지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된다”

신화 23

**“유명연예인이나
유명기업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화 24

**“<삼성이발관>을 열려면
삼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